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5. 9. 3(목) 평창군수(재무과장)

나. 회부일자 : 2015. 9. 8(화)

다. 상정일자 : 2015. 9. 14(월) 제21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재무과장 정성문)

- 현행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폐지된 평창군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수입증지 운영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개정안은 현행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폐지된 평창군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 편의증진 및 수입증지 운영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 폐지, 수입증지의 목적, 정의,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관리 책임공무원 지정,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등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수입증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평창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군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도장을 찍듯이 찍는(이하 “인영”이라 한다) 기계를 말한다.

③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① 군에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서류에 군 명의의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①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인영번호 (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

③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군수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계기고유인영번호(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군수는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한다.

②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된 인영한 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

③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인가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균 수입증지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별표 1]

계기 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가로 = 3cm, 세로 = 3.5cm

※ 인영색갈 = 녹색 및 검은색

※ 테두리 : 자을 정함

[별지 제1호서식]

계기 및 발급기 등 사용 수수료 수입금 일일 결산 대장

결제	담당자	○○	○○

종류별 구분 일자	계						○○원				○○원			
	발행		결손		실수입		발행		결손		발행		결손	
					카드	현금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금액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